



NO. 2010022/IMO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TECHNICAL INFORMATION

23-7, Jang-Dong, Yusung-gu,
Yusung P. O. Box 29, Taejeon,
The Republic of Korea

Phone : + 82-42-869-9346

Fax : + 82-42-862-6098

E-mail : kr-clt@krs.co.kr

date : 2 November 2010

Person in charge : Kim Kyong-Min

Subject :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계획서(STS OPERATIONS PLAN) 승인 및 이행 안내

2009년 7월에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제5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결의서 MEPC.186(59)를 채택하여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에 “제8장(제40규칙, 41규칙 및 42규칙) - 해상에서 유탱커 간의 기름화물의 이송 중 오염의 방지”를 신설하였으며, 이 개정은 2011년 1월 1일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서, 해상에서 화물로써 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을 실시하는 유탱커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실시되는 연차, 중간 또는 정기 검사일 까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이하 “STS OPERATIONS PLAN” 이라 함)를 승인 받아 본선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기술정보는 STS OPERATIONS PLAN의 작성, 승인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1. STS OPERATIONS PLAN 대상 선박, 비치 및 이행 시기

- 1) 대상 선박: 해상에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MARPOL Annex I 화물)의 이송을 실시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탱커
(적용제외: A.연료유의 수급 작업 B. FPSOs, FSUs 및 Drilling rigs의 기름이송).
- 2) 비치 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실시되는 연차, 중간 또는 정기검사 시 까지 승인된 STS OPERATIONS PLAN을 본선에 비치하여야 함.
- 3) 비치 장소: 승인된 STS OPERATIONS PLAN의 사본은 “MANUAL ON OIL POLLUTION SECTION I”의 6.2.3.3항에 따라서 다음 장소에 각각 비치되어야 함.
A. 선교 B.화물제어장소 C.기관실
- 4) 이행 시기: 2012년 4월 1일 이후 행하는 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부터 MARPOL 부속서 I의 제8장의 요건을 이행하여야 함(다만, 승인 받은 STS OPERATIONS PLAN이 본선에 있는 경우 이 시기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승인된 계획서를 따라야 함).

2. STS OPERATIONS PLAN 승인

1) 제출처:

A. 한국적선: 지방해양항만청

B. 한국적 이외 국적선박: 한국선급 협약심사팀

전화: 042-869-9369(담당: 이주현 선임검사원)

팩스: 042-862-6020

E-Mail: leejuh@krs.co.kr, hsoh@krs.co.kr

2) 제출 형식: 전자파일 형태(예,PDF, WORD 파일 등) 또는 책자(우편 접수)

3) 제출 수량: 최소 2부(우편 접수 시)

3. STS OPERATIONS PLAN의 작성, 작업 기록 및 통보

1) STS OPERATIONS PLAN은 해당 선박의 통용 언어(working language)로 작성되어야 함(MARPOL 부속서 I 제41.1규칙) (단, 한국적선: 통용 언어 및 영어).

2) STS OPERATIONS PLAN의 작성은 IMO의 “Manual on Oil pollution, Section I, Prevention” 및 ICS와 OCIMF의 “Ship-to-ship Transfer guide, Petroleum”, fourth edition, 2005를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함(MARPOL 부속서 I 제41.2규칙).

※ STS OPERATIONS PLAN 작성 시 우리선급이 작성한 첨부 1의 샘플 양식을 이용할 것을 권고함. 다른 양식도 이용 가능하나 승인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음.

3)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의 통솔자는 상기 2)항의 매뉴얼에 언급된 자격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의무사항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함(MARPOL 부속서 I 제41.4규칙).

4) 모든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STS Operation)은 기름기록부에 기재되고 최소 3년간 본선에 보관 하여야 하며, 협약 당사국의 점검에 대비하여 항상 쉽게 이용 가능하여야 함(MARPOL 부속서 I 제41.5규칙).

5) 협약 당사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선박대선박 기름이송을 계획하는 각 유탱커는 예정된 작업시작 48시간 전까지 관련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MARPOL 부속서 I 제42.1규칙). -끝-

※ 첨부 1) 한국선급 STS OPERATIONS PLAN 샘플 양식 (국/영문 각 1부)

2) 결의서 MEPC.186(59)

정 부 대 행 검 사 본 부 장 김 규 섭

배부처 : 모든 검사원, 선주, 조선소, 관련 업체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